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송옥주・민병덕・이연희

백승아 · 정성호 · 한정애

이수진 • 이병진 • 염태영

이원택・박 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군인 급식 규정」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 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.

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·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.

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(이하 이 조에서 "현물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 다만, 참모총장이 영외거주(營外居住)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는 현물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실비변상) (생 략)	제53조(실비변상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
	식(이하 이 조에서 "현물"이라
	한다)을 지급한다. 다만, 참모
	총장이 영외거주(營外居住)를
	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
	하여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
	지급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
	영외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
	런 중인 경우에는 현물과 현금
	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.